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30
----------	------

2024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2일, 김기덕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32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기덕 의원)

-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4.1.)을 통해 시장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처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타 지자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조향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체별 협력에 기반한 시책 마련 근거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미세먼지 등 배출을 저감 관리하고자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문맥 흐름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다. 기타: 별도 작성 내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2015년 9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 간 대기오염물질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와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음.

또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을 개최하였고 2022년부터는 이를 계승하여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을 추진해 오고 있는 등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환경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u>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u>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 ----- <u>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15조(협력체계 구축)</u>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u>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